 환경부 <small>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	보 도 자 료		
	보도일시	2019년 5월 2일 조간 (5. 1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대기관리과	신건일 과장 / 이영성 서기관 / 강추향 사무관 044-210-6900 / 6905 / 6914
	배포일시	2019. 4. 30. / 총 9매	

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

- ◇ 배출기준 30% 이상 강화,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
- ◇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6곳 저탄장 옥내화 추진
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% 강화,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,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’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.
 -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.
- 먼저, 1.5MW 이상 섬(도서) 발전시설(18기), 123만 8,000kCal/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(약 5천대), 소각능력 25kg/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(24개)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.
 - ‘섬(도서) 발전시설’의 경우,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,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(신고)를 받아야한다.
 - ‘흡수식 냉난방기기’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,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,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,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(신고)를 받아야한다.

-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‘브롬 및 그 화합물’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% 강화했다.
- 먼지 33%, 질소산화물 28%, ‘황산화물’ 32%, 암모니아 39%, 황화수소 26%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.

<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>

구 분		배출허용기준		강화율(%)
		현 행	개정	
일반 (10종)	먼지(mg/Sm ³)	10~70	5~50	33
	아연 및 그 화합물(mg/Sm ³)	5	4	20
	일산화탄소(ppm)	50~300	50~300	3
	암모니아(ppm)	20~50	12~30	39
	질소산화물(ppm)	20~530	10~250	28
	황산화물(ppm)	10~540	10~250	32
	황화수소(ppm)	2~10	2~5	26
	이황화탄소(ppm)	30	10	67
	탄화수소(ppm)	40~200	40~200	38
	구리 및 그 화합물(mg/Sm ³)	5	4	20

※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경우 최소 최대치가 아닌 중간값이 강화된 것임

- 아울러, ‘크롬 및 그 화합물’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% 강화되었다
- 크롬 및 그 화합물 34%, 비소 및 그 화합물 38%, 수은 및 그 화합물 42%, 시안화수소 20% 등으로 강화되었다.
- 벤조(a)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.
-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(a)피렌(0.05mg/Sm³), 아크릴로니트릴(3ppm), 1,2-디클로로에탄(12ppm), 클로로포름(5ppm), 스틸렌(23ppm), 테트라클로로에틸렌(10ppm), 에틸벤젠(23ppm), 사염화탄소(3ppm)다.

<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>

구 분		배출허용기준		강화율(%)
		현 행	개정	
특정 (24종)	카드뮴 및 그 화합물(mg/Sm³)	0.02~0.5	0.02~0.2	21
	시안화수소(ppm)	5~10	4~8	20
	납 및 그 화합물(mg/Sm³)	0.2~2	0.15~1.5	19
	크롬 및 그 화합물(mg/Sm³)	0.3~0.5	0.15~0.4	34
	비소 및 그 화합물(ppm)	0.25~2	0.2~0.5	38
	수은 및 그 화합물(mg/Sm³)	0.05~2	0.04~0.1	42
	염소 및 그 화합물(ppm)	2~20	2~15	25
	불소화물(ppm)	2~5	2~3	24
	니켈 및 그 화합물(mg/Sm³)	2	2	0(원료회수)
	염화비닐(ppm)	10~180	10~90	30
	페놀(ppm)	5	4	20
	벤젠(ppm)	10	6	40
	포름알데히드(ppm)	10	8	20
	1,3-부타디엔(ppm)	6	6	0('17년 기준설정)
	디클로로메탄(ppm)	50	50	0('13년 기준설정)
	트리클로로에틸렌(ppm)	50~85	50	19
	테트라클로로에틸렌(ppm)	<신설>	10	100
	벤조(a)피렌(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)(mg/Sm³)	<신설>	0.05	100
	1,2-디클로로에탄(ppm)	<신설>	12	100
	클로로포름(ppm)	<신설>	5	100
	아크릴로니트릴(ppm)	<신설>	3	100
	스틸렌(ppm)	<신설>	23	100
	에틸벤젠(ppm)	<신설>	23	100
	사염화탄소(ppm)	<신설>	3	100



□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.

○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 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.

□ 한편,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'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(변경허가) 또는 신고(변경신고)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(변경허가) 또는 신고(변경신고)를 해야 한다.

-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, 보령, 삼천포, 당진, 태안,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(석탄 저장 장소)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.
-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,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및 환경부 누리집(www.me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“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며,
 - “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했다.
 -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‘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’의 삭감 목표량 (3,354톤) 보다 37% 초과 감축(4,605톤)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- 붙임 1.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사항.
 2. 대기오염물질(일반, 특정)의 종류
 3. 전문용어 설명.
 4. 질의응답. 끝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영성 서기관(☎ 044-201-6905, 6906) 또는 강추향 사무관(☎ 044-201-69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붙임 1

대기오염물질(일반 및 특정)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사항

구 분		배출허용기준		강화율(%)
		현 행	개정	
일반 (11종)	먼지(mg/Sm ³)	10~70	5~50	33
	브롬 및 그 화합물(ppm)	3	3	0
	아연 및 그 화합물(mg/Sm ³)	5	4	20
	일산화탄소(ppm)	50~300	50~300	3
	암모니아(ppm)	20~50	12~30	39
	질소산화물(ppm)	20~530	10~250	28
	황산화물(ppm)	10~540	10~250	32
	황화수소(ppm)	2~10	2~5	26
	이황화탄소(ppm)	30	10	67
	탄화수소(ppm)	40~200	40~200	38
	구리 및 그 화합물(mg/Sm ³)	5	4	20
특정 (24종)	카드뮴 및 그 화합물(mg/Sm ³)	0.02~0.5	0.02~0.2	21
	시안화수소(ppm)	5~10	4~8	20
	납 및 그 화합물(mg/Sm ³)	0.2~2	0.15~1.5	19
	크롬 및 그 화합물(mg/Sm ³)	0.3~0.5	0.15~0.4	34
	비소 및 그 화합물(ppm)	0.25~2	0.2~0.5	38
	수은 및 그 화합물(mg/Sm ³)	0.05~2	0.04~0.1	42
	염소 및 그 화합물(ppm)	2~20	2~15	25
	불소화물(ppm)	2~5	2~3	24
	니켈 및 그 화합물(mg/Sm ³)	2	2	0
	염화비닐(ppm)	10~180	10~90	30
	페놀(ppm)	5	4	20
	벤젠(ppm)	10	6	40
	포름알데히드(ppm)	10	8	20
	1,3-부타디엔(ppm)	6	6	0
	디클로로메탄(ppm)	50	50	0
	트리클로로에틸렌(ppm)	50~85	50	19
	테트라클로로에틸렌(ppm)	<신설>	10	100
	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(mg/Sm ³)	<신설>	0.05	100
	1,2-디클로로에탄(ppm)	<신설>	12	100
	클로로포름(ppm)	<신설>	5	100
	아크릴로니트릴(ppm)	<신설>	3	100
	스틸렌(ppm)	<신설>	23	100
	에틸벤젠(ppm)	<신설>	23	100
	사염화탄소(ppm)	<신설>	3	100

※ 특정대기유해물질 1종(다이옥신)은 「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」에서 배출기준 설정·관리

붙임 2

대기오염물질(일반, 특정)의 종류

1. 대기오염물질의 종류(64종)

- 일반대기오염물질 29종(설정완료 11종, 미 설정 18종)
-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(설정완료 25종, 설정예정 8종('19년), 기타 2종)

구분	일반 대기오염물질	비고	구분	특정대기유해물질	비고
1	입자상물질(먼지, 비산먼지, 매연)	기준설정 (‘91) 10종 (‘00) 1종 (탄화수소)	1	카드뮴 및 그 화합물	('91)12종, (‘00)1종, (‘13)1종, (‘16)1종, (‘17)1종, 기준설정 완료
2	브롬 및 그 화합물		2	시안화수소	
3	아연 및 그 화합물		3	납 및 그 화합물	
4	일산화탄소		4	크롬 및 그 화합물	
5	암모니아		5	비소 및 그 화합물	
6	질소산화물		6	수은 및 그 화합물	
7	황산화물		7	염소 및 그 화합물	
8	황화수소		8	불소화물	
9	이황화탄소		9	니켈 및 그 화합물	
10	탄화수소		10	염화비닐(‘00년)	
11	구리 및 그 화합물	-	11	페놀 및 그 화합물	'19년 기준신설 (‘20년 시행)
12	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		12	벤젠	
13	바나듐 및 그 화합물		13	포름알데히드	
14	망간화합물		14	1,3-부타디엔(‘17년)	
15	철 및 그 화합물		15	디클로로메탄(‘13년)	
16	셀렌 및 그 화합물		16	트리클로로에틸렌(‘16년)	
17	안티몬 및 그 화합물		17	테트라클로로에틸렌	
18	주석 및 그 화합물		18	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	
19	텔루륨 및 그 화합물		19	1,2-디클로로에탄	
20	바륨 및 그 화합물		20	클로로포름	
21	황화메틸		21	아크릴로니트릴	
22	메르캅탄류		22	스틸렌	
23	아민류		23	에틸벤젠	
24	인 및 그 화합물		24	사염화탄소	
25	붕소화합물		25	이황화메틸	
26	아크롤레인		26	아닐린	
27	아세트산 비닐		27	아세트알데히드	
28	비스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		28	벤지딘	
29	디메틸포름아미드		29	히드라진	
			30	프로필렌옥사이드	'19년 기준설정 추진중 (‘21년 시행)
			31	베릴륨 및 그 화합물	
			32	에틸렌옥사이드	
			33	석면	석면관리법
			34	다이옥신(‘97년)	잔류성물질법
			35	폴리염화비페닐	잔류성물질법

□ 대기오염물질

-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,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·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64종(일반 29종 + 특정 35종)

□ 특정대기유해물질

-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직·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35종*

*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32종, 「석면관리법」에서 ‘석면’ 1종, 「잔류성물질법」에서 ‘다이옥신’ 및 ‘폴리염화비페닐’ 2종 관리

□ 배출허용기준

-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 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

□ 흡수식 냉·난방기기

- 도시 가스 등의 연소 열에너지를 구동원으로 하여 진공상태로 물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방·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

□ 도서(섬) 발전시설

- 도서(섬)에 설치된 경유사용 발전시설로서 전체 276개 시설(103.7MW)이 있으며, 1.5MW 이상 18개(38MW) 발전시설을 배출 시설에 포함

① 허가(변경허가) 및 신고(변경신고)의 대상은?

-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발생하는 배출 시설 및 특별대책지역*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
 - 배출시설 규모의 50/100 이상 증설 또는 배출시설 용도를 추가** 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
 - * (울산) 울산·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, (여수시)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
 - ** 예) 도장시설 → 도장시설 + 연마시설

- 신고대상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배출시설이 해당
 - 변경신고 대상은 배출시설 증설(10% 이상)·교체·폐쇄,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, 방지시설 증설·교체·폐쇄 등이 해당

② 배출기준이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?

구 분	주요 배출업종
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(벤조(a)피렌)	폐기물처리업 및 석유정제업 등
사염화탄소	직물, 염색 가공업 및 화학물질 제조업 등
에틸벤젠	강선건조업 및 선박부품제조업 등
테트라클로로에틸렌	기계제조업 및 금속가공업 등
스틸렌	플라스틱 제조업 및 화학물질 제조업, 도료 제조업 등
아크릴로니트릴	화학제품 제조업 및 고무·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
클로로포름	섬유제품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
1,2-디클로로에탄	화학물질·화학제품 제조업 및 식료품 제조업 등

③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배출기준 설정 계획은?

특정대기유해물질 전체 35종 중 32종을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관리하며, 현재 24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완료됨

○ 올해 말까지 배출기준이 미설정된 8종의 기준 설정을 완료할 계획

타법에서 관리되는 3종* 중 ‘다이옥신’ (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) 1종의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운영 중

*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‘석면’ 및 변압기, 축전기 등에서 사용되는 ‘폴리염화비페닐’은 배출기준 설정 필요성이 적음

④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은?

「중·소기업 기본법」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이 지원대상임

○ 방지시설 설치비의 90%(정부 50%, 지자체 40%)를 지원하며, 나머지 10%만 사업자가 부담

세부 지원대상,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은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

⑤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할 경우에도 옥내화를 해야 되는지?

2024년까지 저탄장 옥내화를 완료하되, 1년 이내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○ 이에 따라,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, 협의 시 폐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옥내화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